

### 3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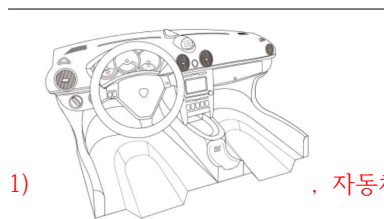
####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생략)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제54조 제3항). 한편, 디자인등록이 무권리자 또는 공동출원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제96조의 2).

### 22페이지

#### 2) 예 외

다만, 완성품의 내부에만 결합하는 부품은 그 거래자에 의해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므로 시각성을 인정할 수 있고,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물품은 뚜껑을 연 상태의 내부를 명확하게 표현하면, 그 내부도 시각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sup>1)</sup>(각주 추가), 투명한 부분을 포함하는 물품은 보이는 대로 도면을 작성하여 내부가 외부에서 보인다면 시각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 자동차의 내부에만 결합하고, 자동차 문을 연 상태에서에서만 보이는 “자동차 내부차체”는 시각성이 인정된다.

## 31~32페이지

### 7. 관련디자인(제35조)

부분디자인등록출원 간에만 적용되며,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에는 물품이 동일한 경우라도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 및 방법이 상이한 바, 관련디자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유사한 경우에는 전체디자인등록출원과 부분디자인등록출원 간이라도 관련디자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심사기준).

### 8. 선출원주의(제46조)

부분디자인등록출원 간에만 적용되며,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에는 물품이 동일한 경우라도 등록을 받고자 하는 대상 및 방법이 상이한 바, 선출원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유사한 경우에는 전체디자인등록출원과 부분디자인등록출원 간이라도 선출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심사기준).

## 08. 화상디자인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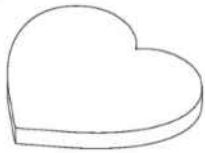
예시 중 [도면 1.1], [도면 1.2], [참고도면 1.1] 등으로 표현된 것은 모두 [도면 1], [도면 2], [참고도면 1] 등으로 수정해 주세요.

## 14. 화면디자인 전체

예시 중 [도면 1.1], [도면 1.2], [참고도면 1.1] 등으로 표현된 것은 모두 [도면 1], [도면 2], [참고도면 1] 등으로 수정해 주세요.

63페이지

아래와 같이 예시 수정해 주세요.



“하트 형상 빵, 초콜릿 등”  
원기둥·사면체 등 주지의 기하  
도형 형상 및 모양



“무지개떡, 가래떡 등”  
주지의 모양을 그대로 이용하  
거나 전용



“초콜릿”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을  
그대로 나타냄

## 106페이지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삭제)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I. 서 설

1. 의 의
2. 취 지

### II. 요건

1. 물품류
  - 1) 원 칙
  - 2)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의 경우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3. 디자인의 설명(시행규칙 별표 2)  
(4 창작내용의 요점 삭제)
4. 도면 작성
  - 1) 원 칙
  - 2) 필수도면(기본도면)
  - 3) 참고도면
  - 4) 특유디자인의 경우
  - 5) 도면의 생략

5. 디자인의 일련번호

### III. 흠결시 효과

1. 반려(시행규칙 제24조)
2. 무효(제18조)
3. 공업상 이용가능성(제33조 제1항 본문)
4. 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5. 물품류 및 정당한 물품명(제40조 제2항)

### IV. 극복 방안

1. 소명 또는 제출원, 절차보완서 제출
2. 보정(제47조 및 제48조)
  - 1) 절차 무효의 경우
  - 2)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의 경우
  - 3) 1디자인 1출원 위반의 경우
  - 4) 물품류 및 정당한 물품명 위반의 경우
3. 분할출원(제50조)

### V. 결 어

## 107페이지

[전자출원을 위한 전자문서작성기의 “디자인 도면” 화면]에서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삭제해 주세요.

## 110페이지

4. 창작 내용의 요저(시행규칙 별표 3) 삭제해 주세요.

## 112페이지

### 2. 무효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의 기재사항 등의 형식이 미비한 경우 제47조제2호의 방식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46페이지

### 2.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 않고(제62조 제2항), 정보제공사유, 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지만,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제공된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거절이유가 될 수 있고(제62조 제4항), 신규성 흠결이 명백한 경우에도 거절이유가 될 수 있다(제62조 제5항).

**177페이지**

“※ 등록된 A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선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 A디자인이 등록되는 경우 이와 유사한 자기의 후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 A'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A≒A'의 관계임).”과 “※ 선출원된 복수디자인출원 중 하나의 일련번호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또는 복수디자인출원 중 하나의 일련번호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정할 수 있다.” 사이에 아래 내용 추가해 주세요.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은 원칙적으로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면 자기의 후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예) 다음 사례와 같이 기본디자인은 피부마사지기의 전체디자인이고 자기의 후출원 또는 동일자 출원은 피부마사지기의 부분디자인으로,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문자부분으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하므로 관련디자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기본디자인이 부분디자인이고 관련디자인이 전체디자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178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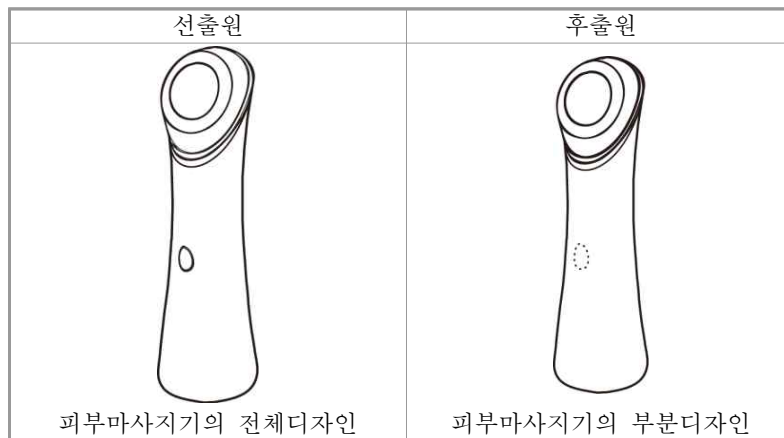
1) 관련디자인 등록요건 위반시

관련디자인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제35조 위반은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관련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제35조가 아닌 제62조 제3항 위반이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고.(생략)

185페이지

“※ A=A, A≃A'의 관계임.”과 “※ 동적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동적디자인과만 선출원을 적용한다. 그러나 동적디자인과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디자인 간의 경우에는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및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디자인과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다만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사이에 아래 내용 추가해 주세요.**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은 원칙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한 경우에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예) 다음 사례와 같이 전체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부분디자인에서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피부마사지기 중간에 위치한 버튼으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매우 미미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하므로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피부마사지기의 부분디자인을 출원한 후 피부마사지기의 전체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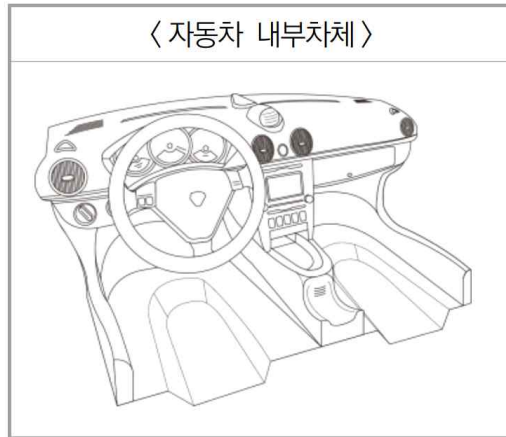


2.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 않고(제62조 제2항), 정보제공사유, 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지만,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제공된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거절이유가 될 수 있고(제62조 제4항), **선출원주의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도 거절이유가 될 수 있다(제62조 제5항).**

188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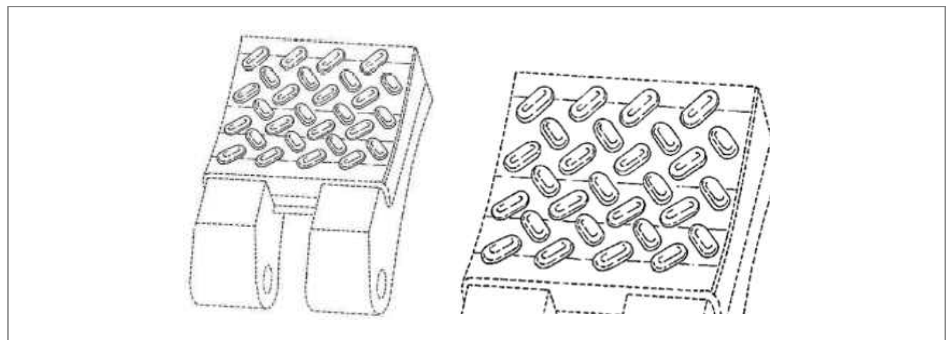
“(생략) 심사기준은 결합상태로 보아 각 물품의 기능·용도가 상실되고 새로운 하나의 기능·용도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래에 아래 그림 추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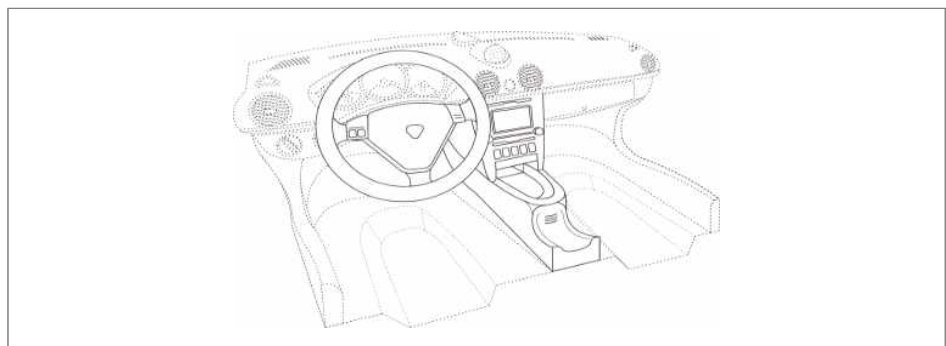
193페이지

③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이지만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예1 미세분쇄기용 스윙 해머



예2 자동차 내부차체



## 211페이지

### 2) 예 외

다만, 제3자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모든 등록요건에 대한 거절결정을 할 수 있고(제62조 제4항), 신규성(제33조 제1항 각호) 또는 선출원주의(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제62조 제5항).

### 2.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제68조)

심사등록과는 달리, 일부심사등록의 경우 부실권리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일부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261페이지

### 4. 이의신청기간의 실질적인 연장

비밀디자인청구를 한 등록디자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부터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제68조 제1항 단서).

279페이지

다.와 라. 사이에 아래 내용 추가해 주세요.

라.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0조의 2)

이전등록된 디자인등록의 원(原)디자인권자 또는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다만, 제104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가 제96조의2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상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85페이지**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9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 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분(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한다.

## 287페이지

### 3. 시기적 요건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지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부터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제68조 제1항 단서).

## 333페이지

3.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대응 견본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 주세요.

### 3. 도면 대응 견본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헤이그 국제출원은 견본이 아닌 도면으로 공개되므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81조 제3항).